



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

화재안전성능보강,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?

- A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성능보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.
- 국토교통부가 성능보강 대상건축물 관리자에게 외장재 교체, 피난계단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.
(공사비 4천만원/동 이내, 국가 : 지자체 : 신청자 = 1 : 1 : 1부담)

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

- 다음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
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
-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- 목욕탕, 고시원, 산후조리원, 학원
※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,000㎡미만에 한함
 - 피난약자이용시설 -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

주택성능보강,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?

- A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외장재 교체, 노후설비(전기·가스 등)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1.2%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.
(공사비 4천만원/호 이내 연1.2%, 5년거치 10년상환)

주택성능보강 대상

- 가연성 외장재 사용, 스프링클러 미설치,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(단독·공동)



건축물 해체공사

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1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
- 2 관리자 → 검토자 해체계획서 검토
- 3 관리자 → 허가권자 허가신청서 제출
- 4 허가권자 → 관리자 허가신청서 검토
- 5 허가권자 →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체계획서 검토 의견서 제출
1. 상부에 10톤이상의 장비를 탑재 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
2. 특수구조 건축물
- 6 해체공사 허가서 및 감리자 지정 통보서 발급
- 7 관리자 해체공사 시행
- 8 감리자 → 관리자 감리 보고서 제출
- 9 관리자 → 허가권자 공사완료 신고서 제출
- 10 허가권자 → 관리자 해체공사 완료 여부 확인 및 신고 필증 발급

건축물관리지원센터란 무엇인가요?

- A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축물 관리 지원 기관입니다.

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

- 건축물 관리,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관련 상담 및 지원
-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평가
-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
- 건축물 관리 관련 전문가 양성, 실태조사 및 사고조사 등

문의·상담

- 건축물 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문의
건축물관리지원센터(한국시설안전공단)
☎ 1588-8788
-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문의
건축물관리지원센터(한국토지주택공사[LH])
☎ 1600-1004
- 건축물 관리계획 문의
한국감정원
☎ 02-2187-4152
-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문의
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
☎ 070-7016-3388~9
-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문의
대한건축사협회 ☎ 1688-2447
(<https://www.kira.or.kr>)
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교육센터 ☎ 055-771-1902
(<https://www.kistecedu.or.kr>)

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
<https://blcm.go.kr>로 접속하세요.

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



건축물 안전

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건축물관리법



2020년 5월 1일
"건축물관리법" 시행을 통해
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!

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, 왜 필요한가요?

A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

건축물 생애이력정보

건축물 생애이력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?

A 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.

Plus Q

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?

- ✓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
- ✓ 건축물 관리계획
- ✓ 건축물 관리점검 및 평가결과
- ✓ 해체공사 결과
- ✓ 내진 능력
- ✓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
- ✓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등



정기점검

정기점검은 무엇인가요?

A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
정기점검 대상

- 다중이용 건축물
-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,000㎡ 이상
-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
Q 9가지 점검 분야

-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
- 해당 연도에 타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구조안전 점검분야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

Plus Q 정기점검 언제 실시하나요?



이렇게 변경됩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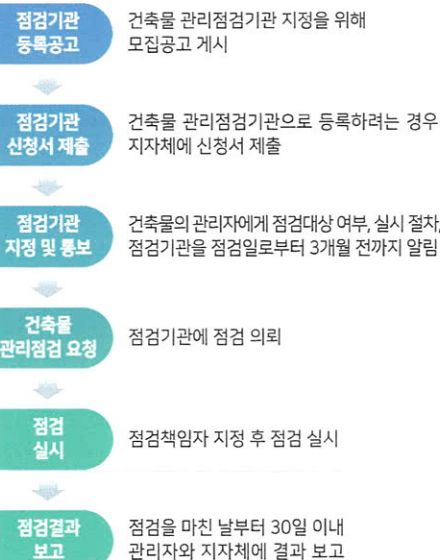
기존
(건축법)

사용승인 10년
경과 후 2년/1회

변경
(건축물관리법)

사용승인 5년 이내
최초, 3년/1회

정기점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지자체

점검기관

지자체

관리자

점검기관

점검기관



건축물 관리점검기관

누가 점검을 하나요?

A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,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자격

-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
- 건설기술용역업자
- 안전진단전문기관
-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
- 한국시설안전공단
- 한국감정원
- 한국토지주택공사

Q 점검자는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.

점검구분	교육대상	최초교육	보수교육
정기점검 등*	점검책임자	35시간	7시간
	점검자	7시간	
안전진단	점검책임자	70시간	14시간
	점검자		

* 정기점검 등(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)

※ 교육기관 : 건축사협회, 한국시설안전공단(자세한 문의를 후면을 참고하세요.)



건축물 관리점검 더 알아보기

긴급점검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.

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.

안전진단 점검결과,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.

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의 평가
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,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점검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, 관리자 및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